

(최연식)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민간의 회계감사 혹은 검토와의 투입시간, 수수료 비교를 통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가 정책 제언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측정하기 위해 미수세금충당금의 재량적 요인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수세금충당금 비율로 대변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회계품질에 대응된다는 논리의 검토가 필요하다.

2 「2020년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웹세미나」 결과보고

가. 개요

- 대주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일 시: 2020.8.26.(수) 15:00~17:30
- 참여방법: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후 웹세미나 참여
- 주 최: 한국회계기준원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정석우(고려대학교)

[발표1] 별도재무제표 유용성검토 및 개선방안[류충렬(KAIST), 심준용(명지대학교)]

[토 론] 이형관(나이스평가정보)

송민섭(서강대학교)

김동길(한영회계법인)

[발표2]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

[윤성수(고려대학교), 두서영(강남대학교)]

[토 론] 황문호(경희대학교)

현승임(삼정회계법인)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발표1) 별도재무제표 유용성검토 및 개선방안

[류충렬 교수(KAIST), 심준용 교수(명지대학교)]

「별도재무제표 유용성검토 및 개선방안」은 류충렬 KAIST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가 공동 발표하였다. IFRS(국제회계기준)상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한국은 2011년 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용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경제 환경에서는 별도재무제표의 역할이 여전히 중대하지만, 관련 기준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법령검토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별도재무제표의 용도를 파악했다. 현행 법령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법과 활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주요 정보로 활용하거나 그 유용성을 인정하여 보조 정보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및 감사인 사례를 토대로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하는 이슈를 검토한 결과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이슈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별도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의 선택을 작성자의 권한으로 두고 있어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방법을 각각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고 목적적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K-IFRS 제1027호의 개선을 별도재무제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원가의 개념 명시, 둘째,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원화(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셋째, 주식공시사항의 범위 보완이 있다.

□ (발표2)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

[윤성수 교수(고려대학교), 두서영 교수(강남대학교)]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는 윤성수 고려대학교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학교 교수가 공동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당

국 등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수와 연결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분율 기준이 아닌 실질지배력 판단기준에 따른 연결 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실질지배력 판단에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연결범위 판단에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당국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연결범위 판단과 회계처리에 관한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이슈 및 제안
관련 활동의 식별과 구조화기업의 연결 판단	[이슈] 구조화기업의 관련 활동범위 판단,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권리 판단에 대해 제한적인 사례만 포함하고 있음 [제안] 구조화기업의 연결에 관한 적용사례를 기준서에 추가 포함하거나 교육자료에 포함
실질지배력 판단	[이슈] 투자자의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의 판단요소에 대한 사례가 원론적이고 원칙적임 [제안] 회계당국의 연결사례 및 감리지적 사례 공유 및 주식공시 모범 사례 보강
본인·대리인 판단	[이슈] 의사결정자의 대리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보상약정에 따른 보상'과 '다른 지분의 이익변동'을 고려하는 방식이 불명확함 [제안] 기준서 관련 문단에 대한 사례 또는 적용지침 제시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식별	[이슈]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고 권한을 위임한 본인이 둘 이상인 경우 권한을 갖는 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별도의 지침이 없음 [제안] 권한을 갖는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 제시
사실상 대리인 여부 판단	[이슈] 특수관계자의 사실상 대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음 [제안] 기준서의 명료화 및 관련 사례 제시
비지배지분 후속측정	[이슈] 우선주 등의 비지배지분에 후속적으로 종속기업의 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음 [제안] 관련 사례 제시 및 해석 요청
뜻가능자본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 비지배주주가 지배기업에 비지배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관련 부채의 최초인식, 후속변동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 [제안] 기준서 또는 지침 제정

□ 주요 토론내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형관) 정보 이용자 집단의 특성 및 국내 금융시스템, 각종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주재무제표로 인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별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정보이며, 정보의 다양성과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공시정보 확대는 정보이용자 집단에 도움이 되지만 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송민섭)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실무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사업부문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외와 기업부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내의 상황에 기인한다. 별도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상에서 제거되는 내부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의 부재가 가장 주요한 이슈일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경우 각 재무제표의 정보효과를 구분하여 목적적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길) 별도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기준서 제1027호의 한계와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감사인의 감사비용을 고려했을 때 별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고려하는 것보다 연결재무제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별도재무제표의 법·제도적인 기반은 관련 법·제도가 K-IFRS 도입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재무제표 작성 이외에 별도재무성과를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부록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황문호)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 수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 혹은 매출액 기준)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한다면 연결재무제표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연구에 제시된 7가지 구체적인 연결회계처리 이슈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어려움이 무엇인지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준서 보완에 앞서 연결범위 판단 등의 회계판단에 경영진의 고

의·중과실로 인한 왜곡과 공시의 누락이 없다면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 회계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

(현승임) 여전히 SPC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위험과 보상에 대한 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SPC의 보유자산을 매입할 권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권리라는 해석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상품을 통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비지배지분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 가능한지 이견이 존재한다.